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0.

발의자 : 정태호 · 김주영 · 염태영
황명선 · 안도걸 · 김영환
오기형 · 이학영 · 복기왕
신영대 · 조승래 · 전현희
이수진 · 한준호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위법 ·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, 심사 ·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선대리인 운영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임을 고려할 때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의 방식으로 처분의 취소 · 변경 등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하여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2).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”을 “심판청구인,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및 제52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”으로, “같다)”를 “같다) 또는 고충민원 관할 과세 관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재결청”을 “재결청 및 고충민원 관할 과세관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선대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